

E- 18 : 국민연금 가입 절차 및 징수

1.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상시근로자와 3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 및 상용직근로자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현장 상용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 업무 수행상 임시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직원을 보조하거나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자.

단, 3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현장 상용근로자에 준한다.

(2) 보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3) 각출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담금, 기여금의 합계액.

(4)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현장)이 부담하는 금액.

(5) 기여금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6) 표준소득월액

각출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3. 자격취득

(1) 자격취득 시기

상시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는 현장에서 채용된 날로 한다.

단, 기고용된 근로자 중 만18세 미만자는 만 18세에 달한 날 자격을 취득한다.

(2) 자격취득 신고

주관부서는 상용근로자채용승인통보시 자격취득 대상자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채용한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므로 현장관리책임자 또는 노무담당은 기한내에 반드시 채용승인신청 및 채용보고를 하여야 한다.

4.자격 상실

(1) 자격상실 시기

국민연금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사망한 때
-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③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퇴직, 해고, 현장철수 등)
- ④ 만60세에 달한 때

(2) 자격상실 신고

주관부서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장관리책임자 또는 노무담당은 상실근로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시근로자 퇴직보고를 통하여 반드시 주관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비용부담

(1) 표준소득월액

표준소득월액이란 각출료 및 연금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근로에 종사한 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에 월수(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말하며, 매년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3) 표준소득월액 내역의 신고

주관부서는 전년도중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의 소득을 근거로 국민연금 관

리공단에 소득월액 내역신고를 한다.

(4) 표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한다.

(5) 각출료

각출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6)의 규정에 의한 각출료 부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자격취득당월에 바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 해당월에 각출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각출료는 각 월에 대하여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각출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6) 각출료율 : 국민연금 각출료율은 다음과 같다.

년 도	계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93~'97년	6.0%	2.0%	2.0%	2.0%
98년	9.0%	3.0%	3.0%	3.0%
99년 이후	9.0%	4.5%	4.5%	-

(7) 비용부담

① 부담금 :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현장)가 부담한다.

② 기여금 :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8) 각출료 송금

현장의 총무담당자는 매월의 국민연금을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로 송금해야 하며 이때 상시근로자 개인부담분4.5%(기여금)와 현장(사용자)부담분 4.5%를 합한 9%를 전액 송금한다.

(9) 각출료의 징수, 납부

각출료는 매월 사용자(주관부서)가 납부한다.